#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08

제출연월일 : 2016. 12. 6.

제 출 자: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일부개정 내용 반영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: 경리관→민간위원 중 호선(안 제2조제2항)

나. 상위법령 중복 사항 삭제.

- 위원회 위촉대상자(안 제2조제2항제1호~제6호)
- 위원의 해촉(안 제12조제1호~제4호)
-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(안 제13조제1항제1호~제9호)

다.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(안 제13조제1항)

라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**3. 근거법규 :**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』 제60조, 제106조, 제106조의 2 및 제109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: "따로 붙임"

#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마. 입법예고 : 2016. 10. 17. ~ 11. 7.(의견 없었음)

바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#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상한금액"을 "금액"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영제106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"사고가 있을 때를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"를 "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"로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2 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사항을 자문한다"를 "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"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위원회의 회의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"를 "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회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는 영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. 제5조제4항은 삭제한다.

제6조제3항 중 "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"를 "회의에 부치는 사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되며"를 "되며,"로, "위원 중에서 해당분야"를 "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"로, "선임한다"를 "지명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해당분야"를 "해당 분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은 삭제한다. 제8조 중 "받고자"를 "하고자"로, "자문을 요청하여야"를 "자문하여야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"를 <sup>"</sup> 구청장은 의사결정 시"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"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"을 "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 서 추정가격이 3천만워 이상의 공사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"(기타사항)"을 "(그 밖의 사항)"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혂

#### 신구조문대비표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 2항,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햀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경리 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 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, 이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 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1조(목적)		
	~	
	<u>금액</u>	
		·

정

안

개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
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 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구청장은 영제106조제3항에 따라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
- 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 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 부한 사람
- 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|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
- 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 자격법」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 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- 5.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,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 약.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
- 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
제3조(임무 및 임기)	) (1)
	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	· 없을 때

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

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.

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
- 2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- 3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사항
- 4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문한다.
- 1. (생략)
- 2. (생략)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생략)

- ② 위원회의 회의(소위원회를 포함 한다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 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

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「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|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자문에 응한다.
  - 1. (현행과 같음)
  -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현행과 같 음

2	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	회
	<u></u>	
_		

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 107조제5항을 따른다.

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

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 ④ 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 춘 사람을 선임한다.
-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 다.
- ⑥ (생략)
-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② (삭 제)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 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- 제8조(심의요청 등) 계약담당자는 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 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

4	(삭제`	)

제6조(소위원회)	(1)	(연행과	같음)
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3)		
	회의에	부치는
사항을		

4
<u>되며,</u>
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
지명한다.

(5)	 			
	 <u></u> 해	당 분	야.	

-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심의요청 등)	
	하고자

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심의사항의 사후관리) ① (생 략)
-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 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 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 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 -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.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 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 고 판단될 때
  - 4.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 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

제11조(심의사항의 사후	[관리] ① (현행과 같
음	
②	
	구청장은 의사
<u>결정 시</u>	

----- 자문하여야 ------

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 다.

제13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제13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)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 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 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

- 1. 마을진입로 확·포장공사
- 2. 배수로 설치공사
- 3. 간이 상·하수도 설치공사
- 4. 보안등공사
- 5. 보도블럭 설치공사
- 6.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- 7. 마을회관공사
- 8. 공중화장실공사
-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공사
- ② (생략)

제15조(기타사항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 상의 공사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그 밖의 사항) ------

#### 붙임

#### 관계법령

- □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- 제16조(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·하수도 사업,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(이하 "주민참여감독자"라 한다)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·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(實費)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6.5.29.>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.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- 나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- 다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- 라.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

- 2.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- 3. <u>제31조의2제1항에</u>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(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,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>
-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2.6.]
- □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)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 <개정 2016.9.13.>
  - 1. 마을 진입로 확장·포장공사
  - 2. 배수로 설치공사
  - 3.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
  - 4. 보안등(保安燈) 공사
  - 5. 보도블록 설치공사
  - 6. 도시·군계획도로 개설공사
  - 7. 마을회관 공사
  - 8. 공중화장실 공사
  - 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
  - 10. 공원 공사
  - 11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
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.
- 제92조의7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(부정당업자)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 2호에서 같다)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
- 2.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
- 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(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
- 5.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
-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2.5.]
- 제106조(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·도에 설치하는 시·도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와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시·군·구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  -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인 사람

- 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4. <u>「건설기술 진흥법」</u>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. 삭제 <2016.1.15.>
- < 5.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·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>
- 6.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7.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- ③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·군·구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06조의2(계약심의위원회위원의해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06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(제4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[본조신설 2016.1.15.]

제107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·용역·물품 등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④ 계약심의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⑤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건"을 "안건"으로, "부정당업자"를 "심의 관련자"로 본다. <개정 2015.8.19.>
- ⑥ 삭제 <2016.1.15.>[전문개정 2010.7.26.]

제108조(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)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 <개정 2011.9.15.>

- 1. 시·도위원회: 해당 시·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)
- 2. 시·군·구위원회: 해당 시·군·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4.11.24.> [전문개정 2010.7.26.]

#### 제109조(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)

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 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308)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12. 6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2. 12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2. 16.(금)

#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성규 행정지원국장)

○ 상위 법령인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」

일부개정 내용 반영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: 경리관→민간위원 중 호선(안 제2조 제2항)
- 나. 상위법령 중복 사항 삭제.
  - 위원회 위촉대상자(안 제2조제2항제1호~제6호)
  - 위원의 해촉(안 제12조제1호~제4호)
  -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(안 제13조제1항제1호~제9호)

다.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(안 제13조제1항)

라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 4. 관련법령

○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60 조, 제106조, 제106조의2 및 제109조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 부개정 내용 반영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 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2016. 10. 17부터 11. 7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